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3
------	-----

2023. 0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홍국표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4.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국표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를 신설함(안 제9조제4항).
- 다.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함(안 제19조).
- 라. 지방보조사업의 중요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발의됨.

나. 개정안의 발의 배경

-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 제정·시행(2021.7.13.)됨.

-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기능 확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기준보조율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2022.9.).
- 그러나,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제외 사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1)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안 제3조)

- 개정안은 예산운영의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생략)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규칙-----.

-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등 8개 분야로 하고 기준보조율의 상·하한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분야 및 기준보조율의 범위 >

분야	하한선(%)	상한선(%)
사회복지	30	100
공원·환경	30	100
도로·교통	30	50
도시계획·주택정비	30	50
산업경제	30	70
도시안전	30	50
문화관광	30	100
일반행정	30	50

- 개정안은 기준보조율 기준 변경 사유에 대해 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준보조율 예외결정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실익은 없음.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외(안 제9조제4항 신설)

- 안 제9조제4항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공모 제외 대상은 ▶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된 경우, ▶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 용도 지정의 기부금, ▶ 지방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의 수행 없이는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지방보조사업 수행자가 구청장인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임.

현행	개정안
<p>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생략)</p> <p>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신설></p>	<p>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p> <p>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p> <p>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p> <p>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p>

현행	개정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교부하는 것이 원칙(제7조제1항)이나, 공모 절차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음(제7조제2항).
-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공모절차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공모절차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심사를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측이 어려운 보조금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 다만 법률의 공모 예외 규정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 입법적 실익이 없는 규정이며 입법경제상 적절하지는 않음.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과평가서 제출(안 제18조제2항 신설)

- 안 제18조제2항은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성과평가) ①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18조(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현재 서울시는 사업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유지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있음.

<서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체계>

구분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4-5월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부여) - 상대평가: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로 등급배분 - 미흡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표시
심층심의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매년 6월	-심의대상: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 심의 -심의내용: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심층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보조사업 목적과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통해 확인·점검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효과가 있음.

(4)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한 시 홈페이지 공표(안 제22조제1항)

- 안 제22조제1항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 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의 중요 처분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u>주민에게</u>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표) ① ----- ----- ----- ----- 시 홈페이지 지에 등을 통해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3조).
-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행정정보 공개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의 변동, 교부 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알권리 보장을 담보하게 됨.
- 다만,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표’와 ‘공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수정의견
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등을 통해 -----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5) 회의록 공개원칙 규정 강화(안 제32조)

-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는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하고, 혼용하고 있는 ‘공시’와 ‘공표’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시’와 ‘공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공시’로 통일함(안 제22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3의2 신설).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53
----------	--------

제안년월일 : 2023년 0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하고, 혼용하고 있는 ‘공시’와 ‘공표’를 하나의 단어로 통일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22조 제목과 본문의 내용 중 ‘공시’와 ‘공표’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공시’로 통일함(안 제22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제3의2 신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안 제22조의 제목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표)”를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등을 통해”를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로 한다.

안 제29조제1항 중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31조제1항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 ⑤ (생략)</p> <p>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p> <p>1.~ 3. (생략)</p> <p>②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③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 ----- <u>시장</u> ----- <u>은</u> ----- <u>사항에</u> <u>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1.~ 3.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삭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② ~ ⑤ (개정안과 같음)</p> <p>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p> <p>1.~ 3. (개정안과 같음)</p> <p>3의2. <u>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u></p> <p>②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를 “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

제32조제4항 중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생 락)</p> <p>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p> <p>③ (생 락)</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8조(성과평가) ① (생 락)</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8조(성과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서를 매년 8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 ④ (생략)</p> <p>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u>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3. (생략)</p> <p><신설></p> <p>4. ~ 8. (생략)</p> <p>② <u>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③ (생략)</p> <p>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p> <p>④ <u>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u></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 ----- ----<u>처분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시장은 ----- <u>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u>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할 때</u></p> <p>4.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비치하고 작성된 회의록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